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 윤준병ㆍ이용우ㆍ서영교

김주영 · 복기왕 · 박민규

박희승 • 전진숙 • 허종식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생긴 이상기후에 의해 벼 병충해, 냉해, 우박, 홍수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이 침수되어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 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 경영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

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재해대책)"을 "(재해대책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제1항 본문 중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을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로, 같은 항 단서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축산식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 및 생산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제3조(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_재해 이전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 대책으로----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 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u>⑤</u>·<u>⑥</u> (생 략)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대하여 농작물・산림작물・가
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매
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
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
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산림작물・가
축・수산양식물의 품목 및 생
산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의 공동부렁(이하 "공동부렁"이
라 한다)으로 정한다.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간은)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학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⑧ (생 략)